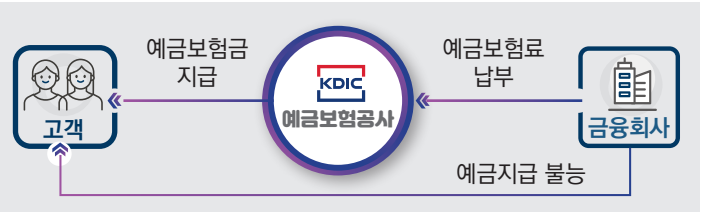


예금자보호제도란?



-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 예금자보호안내문을 확인하셨나요?
- ☑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제도

-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홍보물 등에 표시하고, 금융거래계약 체결 시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호금융상품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보호금융상품에는 예금자보호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로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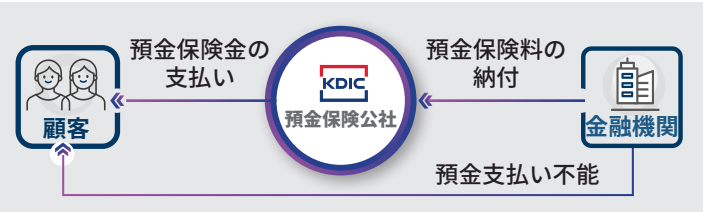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 공사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dic.or.kr>
(홈페이지 - 제도·정책 - 보호대상 - 금융상품 -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 QR코드로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검색해보세요.

預金保険制度とは？



- 金融機関が営業停止や破綻などにより、顧客預金の支払いができなくなった場合、韓国預金保険公社がその預金を代わりに支払うことで預金者を保護する制度です。
- ☑ 預金者保護案内文を確認しましたか？
- ☑ 預金保険関係について説明を受けましたか？

預金保険関係表示・説明・確認制度

- 預金保険関係表示・説明・確認制度は、預金者保護法により預金保険の対象金融機関が販売する金融商品について預金者保護の有無や保護限度額などを広報資料に表示するとともに、金融取引契約を締結する際にその内容を説明し、確認を得ることで、不適切販売を防ぎ金融消費者の被害を防止するための制度です。

保護対象金融商品が一目でご確認いただけます！

- 保護対象金融商品には預金者保護の有無が一目で分かるロゴが付いています。



保護対象金融商品の検索

- 預金保険公社の公式サイトにて保護対象金融商品を簡単に検索することができます！
<http://www.kdic.or.kr>
(公式サイト - 制度・政策 - 保護対象 - 金融商品 - 保護対象金融商品を検索)



▲ QRコードで保護対象金融商品を検索してください。

나의 예금보호금액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금융상품, 거래금액 등을 본인이 직접 입력함으로써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금액 등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도록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를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금융아카데미에 접속해 보세요!



예금보험공사는 재무관리 방법, 예금보험제도, 금융지원제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정보를 담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e-교육 교재 제공, 방문교육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생활금융아카데미” 홈페이지(kdic.or.kr/edu)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전화(02-2259-895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예금보험공사에 물어보세요!



예금보험제도에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1588-0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은 한국어만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동 자료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자료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ご自身の預金保護額を計算してみましょう！



預金保険公社では、金融機関や金融商品、取引金額などの情報を本人が入力することで、預金保護の有無や保護額などをシミュレーションできるよう、「預金保護額シミュレーター」を公式サイト（www.kdic.or.kr）にて公開いたしました。

生活金融アカデミーにアクセスしてみましょう！



預金保険公社では、財務管理方法や預金保険制度、金融支援制度など、生活に欠かせない金融情報を盛り込んだ教育プログラムを提供しております。(e-教育教材の提供、訪問教育申し込み可能)

詳細については「生活金融アカデミー」公式サイト(kdic.or.kr/edu)をご確認ください。その他、ご不明な点がございましたら、相談窓口(02-2259-8956)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預金保険公社にお尋ねください！



預金保険制度についてご不明な点がございましたら、預金保険公社の相談窓口（1588-0037）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電話相談は韓国語のみ対応しております。

預金保険公社

04521 ソウル特別市中区チョンゲジョン口30

本資料は2025年9月時点で作成したもので、関連法令の改正等により内容が変更になる場合があります。

また、本資料は預金保険制度に関する理解を深めるための情報提供の目的でのみ提供されるものであり、いかなる法的効力も有しないことをご承ください。

국내 거주자용 참고자료

더 큰
안심이
열립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

KDIC

보호대상 금융상품 여부를 설명 듣고 확인하세요!



韓国居住者向け参考資料

より大きな
安心を
お届けします

元本と利息を合わせて
金融機関ごとに 1人当たり、
1億ウォンまで保護

KDIC

十分な説明を受けたうえで、
保護対象金融商品かどうかをご確認ください。



예금보호한도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 부보금융회사의 1년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보험계약의 사고보험금은 1억원까지 별도 보호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편입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은 합산하여 1억원까지 별도 보호합니다.
- 연금저축(신탁·보험)은 1억원까지 별도 보호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저축은행입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수협은행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P2P사, 가상자산사업자, 선평업자 및 유사수신업자 등은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預金保護限度額

- 元本と所定の利息を合わせて金融機関ごとに1人当たり1億ウォンまで保護されます。
- 所定の利息とは、約定利息と預金保険公社が定める利息*のいずれか少ない金額を指します。
* 預金保険の対象金融機関の1年満期定期預金またはこれに準ずる金融商品の平均利率を考慮して決定
- 保険契約については、保険契約者1人当たり解約返戻金(または満期時の保険金)と、その他の支払金とを合算した金額が1億ウォンまで保護されます。
- 保険契約上の保険事故による保険金は、1億ウォンまで別枠で保護されます。
- 確定拠出年金(DC)、個人型退職年金(IRP)、中小企業退職年金基金に組み入れた金融商品のうち、預金保護対象として運用される金融商品は、合算して1億ウォンまで別枠で保護されます。
- 年金貯蓄(信託・保険)は、1億ウォンまで別枠で保護されます。

預金保険の対象金融機関

- 預金保険の対象金融機関は銀行、保険会社、投資売買業者、投資仲介業者、貯蓄銀行です。
- 外国銀行の韓国支店と農協銀行・水協銀行も預金保険の対象金融機関です。
- 農協・水協地域組合、信用協同組合、セマウル金庫、郵便局の場合は個別法令に基づき、自社の基金などにより保護されています。
- P2P事業者や仮想資産事業者、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無登録の資金募集事業者などは預金保険の対象金融機関ではありません。

보호금융상품 & 비보호 금융상품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무주알펀드, MMF 등)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¹⁾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개발신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증권이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 신용거래자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이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증권금융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MMF 등) · 청약저축금, 저지급예수금, 유동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현물거래에탁금 등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링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인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증권사 발행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발행어음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중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의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중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무주알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증권사 발행채권 등
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²⁾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³⁾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주: 1) 주택도시基金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주택도시基金법 제14조 제2항)
2)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하여 저축은행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편입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은 합산하여 1억원까지 별도 보호하며, 사고보험금과 연금저축(신탁·보험)은 각각 1억원 한도로 별도 보호

保護対象金融商品 & 保護対象外金融商品

区分	保護対象金融商品	保護対象外金融商品
銀行	· 普通預金、企業自由預金、別段預金、当座預金等要求払預金 · 定期預金、貯蓄預金、住宅申込預金、表紙手形等貯蓄性預金 · 定期積金、住宅申込積立金、相互積立金等積立預金 · 外貨預金 · 預金保護対象金融商品として運用される確定拠出年金および個人型退職年金の積立金 · 中小企業退職年金基金に組み入れた金融商品のうち、預金保護対象として運用される金融商品 · 個人貯蓄口座 (ISA) に組み入れた金融商品のうち、預金保護対象として運用される金融商品 · 元本が保全される金銭信託等	· 譲渡性預金証書 (CD)、買戻条件付債券 (RP) · 金融投資商品 (受益証券、ミュチュアルファンド、MMF等) · 銀行発行債券 · 住宅申込貯蓄、住宅申込総合貯蓄等¹⁾ · 確定給付年金の積立金 · 特定金銭信託等実績配当型信託 · 開発信託
投資売買業者・投資仲介業者	· 証券の買付等に使用されず顧客口座に現金として残っている金額 · 自己信用貸株担保金、信用取引口座設定保証金、信用供与担保金等の現金残高 · 預金保護対象金融商品として運用される確定拠出年金および個人型退職年金の積立金 · 個人貯蓄口座 (ISA) に組み入れた金融商品のうち、預金保護対象として運用される金融商品 · 元本が保全される金銭信託等 · 証券金融会社が資本市場と金融投資業に関する法律第117条の8の規定に基づき証券金融会社に預託されている金銭	· 金融投資商品 (受益証券、ミュチュアルファンド、MMF等) · 申込者預り金、税金預り金、流通金融貸株担保金 · 買戻条件付債券 (RP) · 金現物取引預託金等 · 確定給付年金の積立金 · ラップ口座、株価指数連動証券 (ELS)、株価連動派生結合社債 (ELB)、株式ワラント証券 (ELW) · 証券会社総合資産管理口座 (CMA) · 証券会社発行債券 · 資本市場と金融投資業に関する法律第117条の8の規定に基づき証券金融会社に預託されている金銭 · 資本市場と金融投資業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137条第1項第3号の2の規定に基づき証券金融会社に預託されている金銭 · 総合金融投資事業者 (大手IB) 発行手形
保険会社	· 個人が加入している保険契約 · 退職給付保険 · 変額保険契約の特約 · 変額保険契約の最低死亡保険金・最低年金積立金・最低一部引出額・最低終身一部引出額等最低保証 · 預金保護対象金融商品として運用される確定拠出年金および個人型退職年金の積立金 · 中小企業退職年金基金に組み入れた金融商品のうち、預金保護対象として運用される金融商品 · 個人貯蓄口座 (ISA) に組み入れた金融商品のうち、預金保護対象として運用される金融商品 · 元本が保全される金銭信託等	· 保険契約者および保険料納付者が法人である保険契約 · 保証保険契約、再保険契約 · 変額保険契約の主契約 (最低死亡保険金・最低年金積立金・最低一部引出額・最低終身一部引出額等最低保証を除く) 等 · 確定給付年金の積立金
総合金融会社	· 発行手形、表紙手形、手形管理口座 (CMA) 等	· 金融投資商品 (受益証券、ミュチュアルファンド、MMF等) · 買戻条件付債券 (RP)、譲渡性預金証書 (CD)、企業手形 (CP)、総合金融会社発行債券等
貯蓄銀行	· 普通預金、貯蓄預金、定期預金、定期積金、信用積立金、表紙手形 · 預金保護対象金融商品として運用される確定拠出年金および個人型退職年金の積立金²⁾ · 個人貯蓄口座 (ISA) に組み入れた金融商品のうち、預金保護対象として運用される金融商品³⁾ · 相互貯蓄銀行中央会発行自己宛小切手等	· 貯蓄銀行発行債券 (劣後債等) 等 · 確定給付年金の積立金

注: 1) 住宅都市基金に基づき政府が別途で管理 (住宅都市基金法第14条第2項)
2) 預金保険の対象金融機関を通じて貯蓄銀行の預金保護対象金融商品として運用される場合
※ 政府、地方自治体 (国・公立学校を含む)、韓国銀行、金融監督院、預金保険公社、預金保険の対象金融機関の預金等は保護対象外
※ 確定拠出年金、個人型退職年金および中小企業退職年金基金に組み入れた金融商品のうち、預金保護対象として運用される金融商品は、合算して1億ウォンまで別枠で保護される。保険事故による保険金と年金貯蓄 (信託・保険) は、それぞれ1億ウォンまで別枠で保護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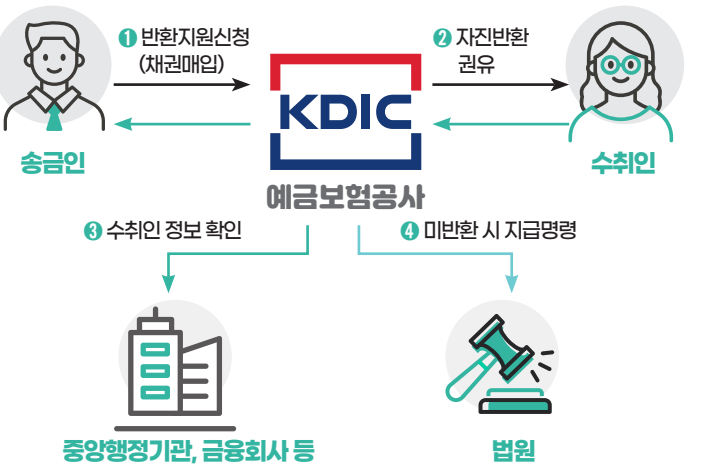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 잘못 보낸 금액(건 당)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 2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3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잘못 보낸 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의심) 계좌이거나,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 또는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 등은 지원불가

예금보험공사는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예금보험공사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을 대신하여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 fins.kdic.or.kr
- 모바일 앱 : 금융안심포털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 1588-0037

※ 신청 관련 서류는 fins.kdic.or.kr



誤送金返還サービス

- 誤送金返還サービスとは? 送金人が誤って送金した金銭を預金保険公社が代わりに回収する制度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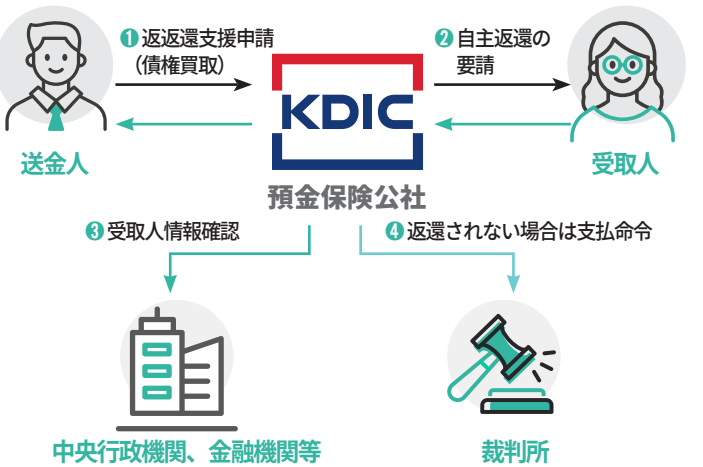
申し込みができるのはどのような場合ですか?

- 1 誤って送金した金額 (1件当たり) が5万ウォン以上1億ウォン以下の場合
- 2 誤って送金した日から1年以内の場合
- 3 送金時に利用した金融機関等を通じて誤送金の返還を求めたものの、返還されなかった場合

※ 誤って送金した口座が詐欺やボイスフィッシングなど犯罪利用 (疑い) 口座であるか、差し押さえなど法的制限のある口座または支払停止口座である場合は対象外

預金保険公社はどのようにサポートしてくれますか?

預金保険公社は誤って送金した人に代わってお金を受け取った人に返還を求めるとともに、必要場合は法的手続きを行います。



どのように申し込みすればいいですか?

- オンラインでのお申し込み : fins.kdic.or.kr
- モバイルアプリ : 金融安心ポータル
- 窓口でのお申し込み : 預金保険公社本社1階相談センター
- 1588-0037

※ お申し込みに必要な書類については、fins.kdic.or.krをご確認ください。

